

2023년도

**무주 설천-무풍 도로시설개량공사 등 3건
교통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목 차

- I. 설 계 설 명 서
- II.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III.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IV. 보 안 대 책
- V. 기 타 사 항
- VI. 예 정 공 정 표
- VII. 설 계 예 산 서
- VIII. 위 치 도

I .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무주 설천-무풍 도로시설개량공사 등 3건 교통안전진단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무주 설천-무풍 도로시설개량공사 등 3건과 관련하여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측정·평가하여 안전한 도로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위치

구 분	노 선	시 점	종 점	사 업 규 모
무주 설천-무풍	국도30호선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전북 무주군 무풍면 칠목리	L=7.1km, 2차로 개량
임실 성수-진안 백운	국도30호선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L=5.9km, 2차로 개량
고창 상하-해리	국도22호선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전북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L=5.8km, 2차로 개량

4. 과업개요 : 교통안전진단평가 1식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 용역과업은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34호, 2018.1.10.)」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 실시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범위

- 「교통안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한 도로건설공사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3. 교통안전진단 인력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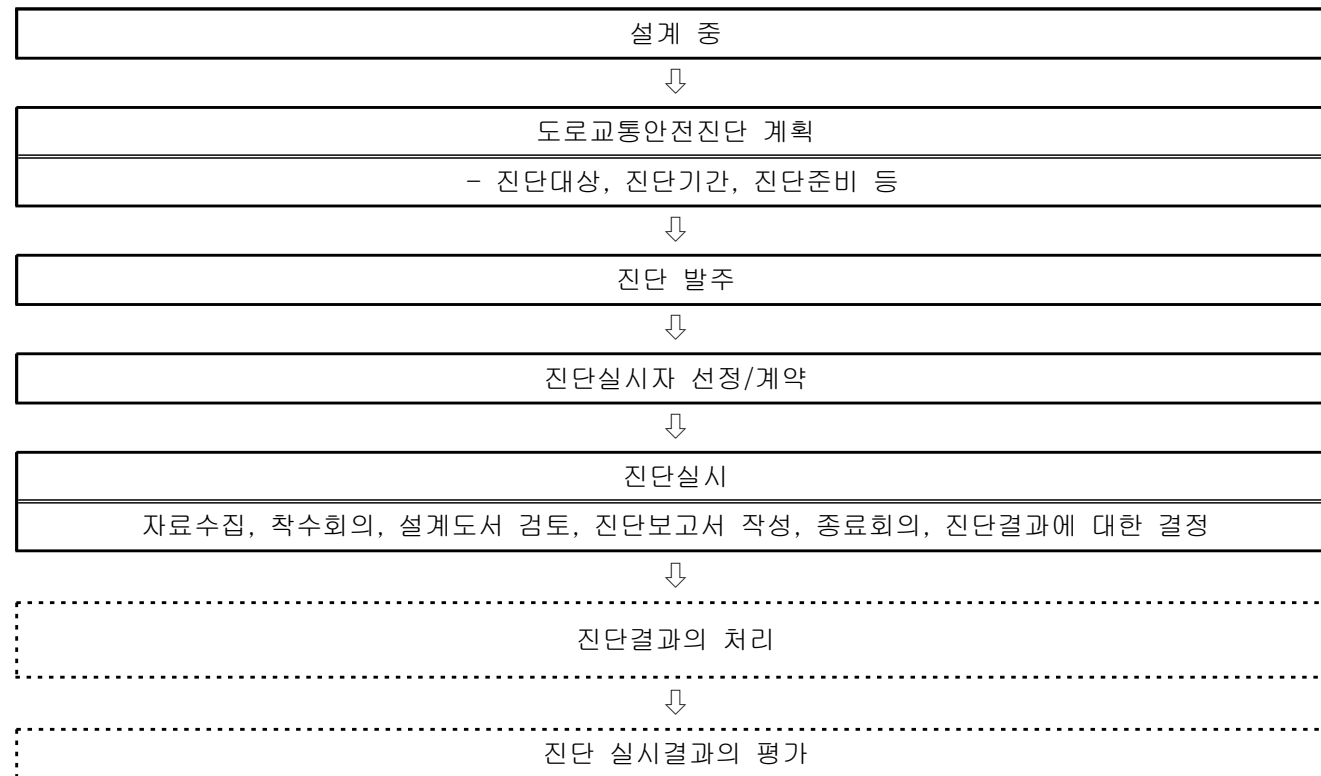
- 교통안전진단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구성은 책임 교통안전진단사 1인, 교통안전진단사 2인, 보조요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협의 후 변경가능)
- 책임 교통안전진단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로서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 건설사업관리(舊 감리), 감독, 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교통안전진단사는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 건설사업관리(舊 감리), 감독, 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보조요원은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감리·감독·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4. 교통안전진단의 준비

4.1 도로교통안전진단의 설계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4.2 진단실시자

-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도로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4.3 진단 수행과정

4.3.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청

- 1)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 2)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 1) 도로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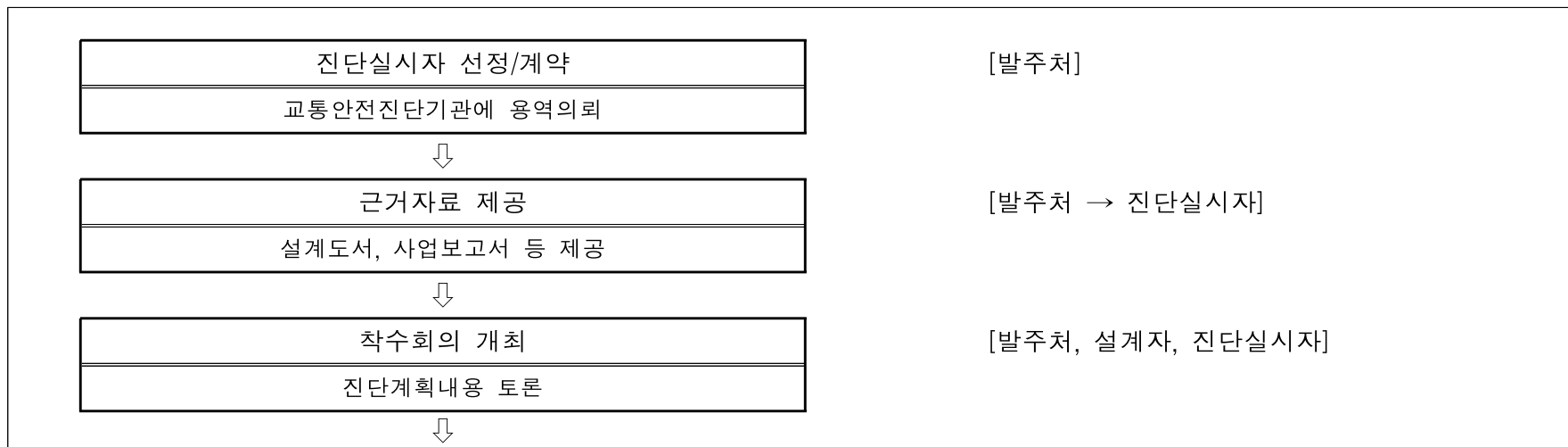
다. 설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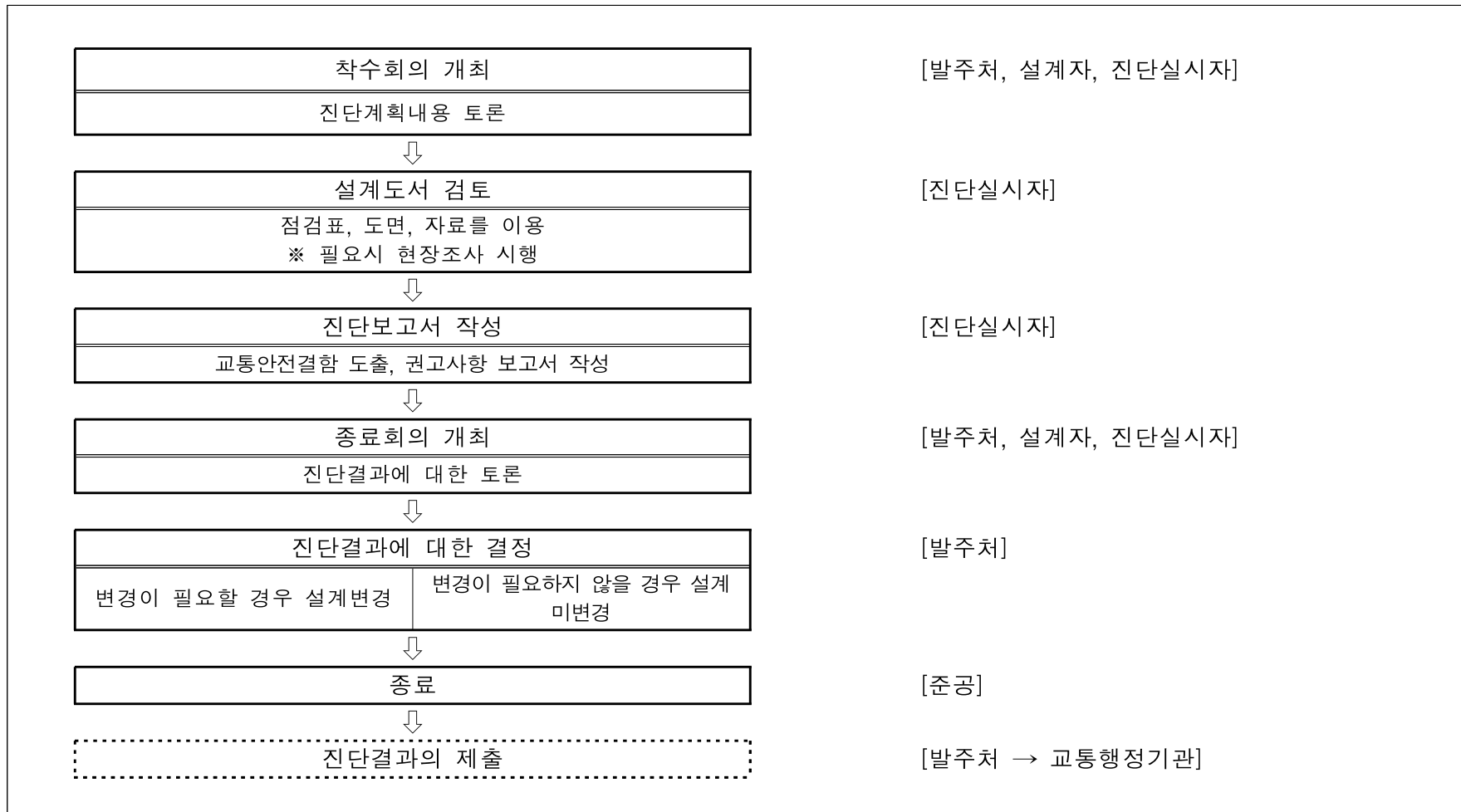
-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4.3.2 수행흐름도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그림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4.3.3 근거자료 제공

가. 우리청은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한다.

나.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 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가로등 등) 등

4.3.4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4.3.5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도로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3.6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3.7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구성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도로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 1) 제출문(진단기관의 장)
-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 3) 진단실시자 명단
- 4) 진단결과 요약문
-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 2) 진단단계
- 3) 진단기간
-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 1) 도로 현황
- 2) 교통량 현황
- 3) 교통사고 분석현황(도로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 1) 결론
-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 1)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 2) 근거자료
- 3) 기타 참고자료

4.3.8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3.9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1)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
- 2) 권고사항의 미수용

4.3.10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 1) 교통안전진단자는 우리청에서 수행하는 당해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 등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도로시설설치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국토교통부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할 시·도지사

다) 시도·군도·구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나)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기간

-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9개월(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 마. 도로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IV.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는 착수 시 제출한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소속회사 임직원에만 한하며,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작성된 회의자료 등은 발행부수 등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료작성 목적 종료 시에는 지체없이 회수 후 파기하여야 한다.

8. 용역성과물의 부수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다.
9. 용역성과물이 불량·파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10. 용역 과업 수행 중 관련자료 임의사용·유출 등 보안관리 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용역 회사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11.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V. 기타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당 공사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VI. 예정공정표

◎ 전 체 : 270일(9개월)

세 부 공 중 (교통안전진단)	착 수 일 로 부 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과업계획 수립									
2. 설계도서 검토									
3. 보고서 작성									
4. 심의/협의 추진									
5. 최종 성과품 작성									

I .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IV. 보 안 대 책

V. 기 타 유 의 사 항

VI. 예 정 공 정 표

VII. 설 계 예 산 서

산 출 근 거

VIII. 위 치 도

구간

무주 설천-무풍

위치도



구간

임실 성수-진안 백운

위치도



구간

고창 상하-해리

위치도

